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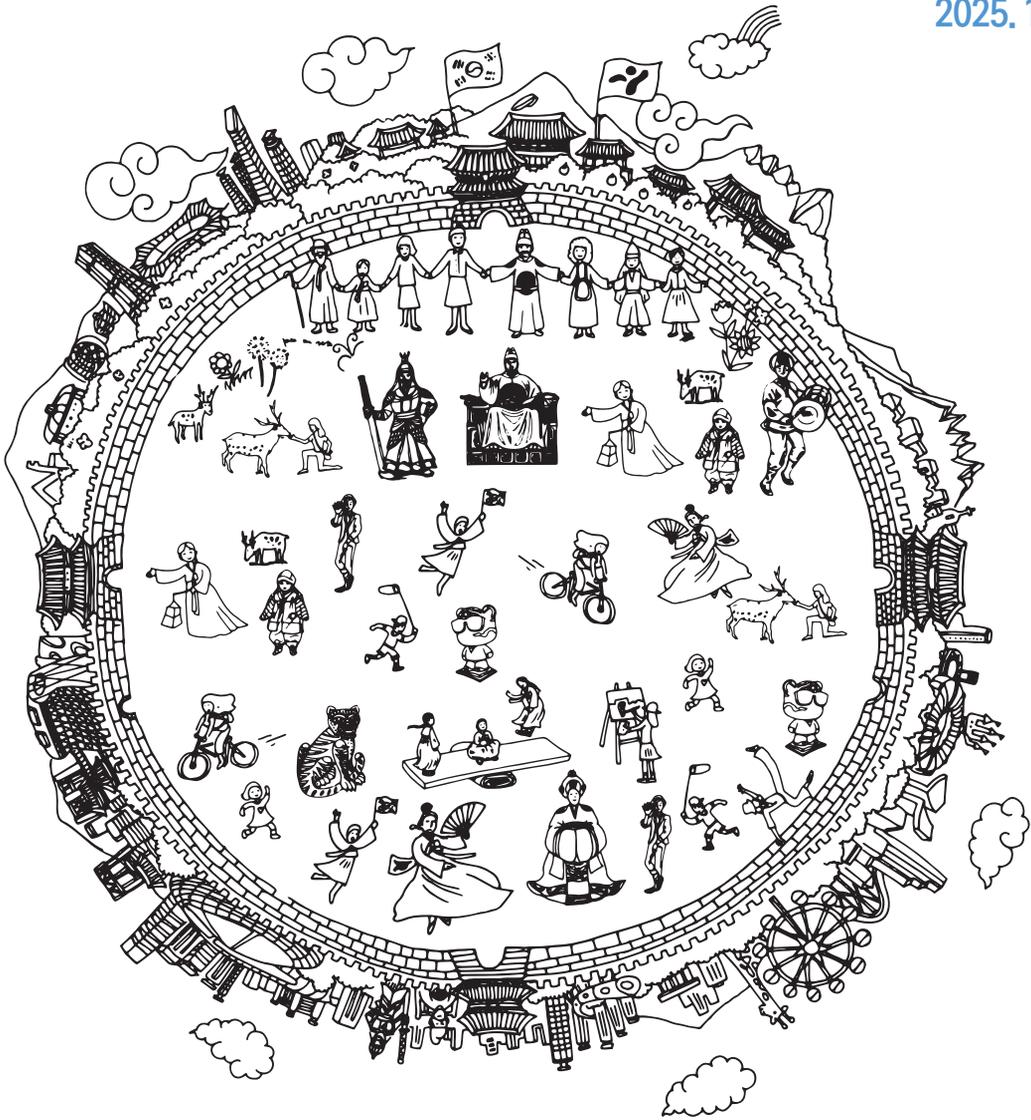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34호
2025. 1. 3.(금)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43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9431호	서울특별시 남너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943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9433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9434호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9435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정개정조례	16
제9436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9437호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9438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943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9440호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9441호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9442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9443호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32
제9444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9445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9446호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39
제9447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9448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9449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9450호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제9451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제9452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9453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9454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945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9456호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3

제9457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9458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9459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제9460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9461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9462호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946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9464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9465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9466호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9467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9468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9469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9470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9471호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95
제9472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98
제9473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9474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9475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8
제947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9477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제9478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9479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9480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9481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3
제9482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제9483호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127
제9484호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130
제9485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제9486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9
제9487호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141
제9488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52
제9489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제9490호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0
제9491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3
제949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165
제9493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73
제949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6

제9495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179
 제9496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5
 제9497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7

[규 칙]

제4675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91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9430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한강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 증대,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 이용환경 개선”으로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4조제3호 중 “설치되어야하며”를 “설치되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과 관련된 시책은 그 집행으로 인한 한강 생태계의 장·단기적 변화를 지속하여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한강공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이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행사 개발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된다”를 “되며, 시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한강의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의 시책 추진에 따른 한강의 생태환경·기능·생물다양성의 변화 등 시책 집행의 효과와 실적 현황
3. 한강 이용현황 및 프로그램·행사 참여현황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한강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다양한 생물종의 보금자리이자 도시 생태계의 핵심 축임. 그러나 최근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한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한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강공원의 목적에서 생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대, 이용환경 개선 등을 추가함(제1조).
- 나. ‘생물다양성’의 정의를 신설함(제3조제3호).
- 다. 한강공원 생태 보전 시책의 장·단기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는 규정을 신설함(제4조제4호).
- 라. 시장의 책무로 한강의 환경 훼손 최소화 및 홍보·참여 활성화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2항 및 제3항).
- 마. 시민의 책무로 한강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시책에 대한 적극적 협력 의무를 추가함(제6조제2항).
- 바. 한강 시책 추진에 따른 생태환경·기능·생물다양성 변화 등 시책집행의 효과와 실적 현황을 추가함(제10조제2항제2호).
- 사. 한강 이용현황 및 프로그램·행사 참여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0조제2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431호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3년 이내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양성평등고용정책위원회, 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 차별조사관등의 역할이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서울시 노동조사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므로, 위원회 및 시행계획 등을 통합 및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정책의 내실화를 기함
-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정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일·생활 균형 실천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양성평등고용정책 종합계획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 나. 양성평등고용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신설)
- 다. 서울시 노동조사관의 역할과 유사·중복되는 차별조사관 직제 폐지(제12조 삭제)
- 라. 일·생활 균형 실천 기업 소속 근로자 지원 근거 마련(제19조제2항)
- 마. 시장이 지정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 마련(제19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32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광고물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 우수한 간판디자인 발굴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미관 상,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간판 디자인 발굴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조항을 마련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미관상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옥외 광고물 등 정비 및 개선, 간판디자인 발굴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실태조사 조항 신설(제3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33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 심리·적성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3.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정보제공
4.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
5.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그 밖에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저출생 현상으로 아동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학업 스트레스, 또래 관계 문제, 복잡하고 빠르게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우울증, 불안 장애 등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습 능력 저하, 대인관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정신질환이나 사회 부적응 등으로 이어져 미래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및 낙인감·편견 등으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아동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아동기에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적성에 맞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동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또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2조2제1항)
- 나.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12조2제2항)
- 다.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관련사항을 규정함(제12조2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34호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을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가목 중 “제10조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을 “제10조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을 “제11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 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12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를 “제12조에 따른 영양·식생활 실태조사” 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위원회’ ” 를 “ ‘위원회’ 라 한다.” 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노인, 노숙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1인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섭취장애가 있는 시민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 사업
6. 시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를 “(영양·식생활 실태조사)” 로 하고, 같은 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영양·식생활 실태조사) 시장은 제11조의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종합·제출 등) ① 시장은 관할 자치구 구청장이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청장이 보고하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변경된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 교육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1인 가구’의 경우, 아침 결식, 외식, 나트륨 및 당 과잉섭취 등 전반적으로 영양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새로운 ‘영양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조례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는 ‘자립준비청년’과 ‘1인 가구’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영양 취약계층’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추어,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1인가구’ 등을 포함하고자 함. 그리고 이에 더해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영양관리사업’에 보충식품 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을 추가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영양관리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 추가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제11조제1항 및 제2항).
- 나.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의무 신설(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35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정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율주행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를 “자치구, 시 출연·출자기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공영차고지 사용 허가)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발전 지원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혜택을 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교통소외지역 거주민, 사회적 약자(교통약자 등)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여건임
-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확대에 따라 차고지 확보가 어려움에 있어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버스)도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운송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 이외 자치구 등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제19조)
- 나. 자율주행자동차도 공영차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마련(제20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436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를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 (이하 “수탁자” 라 한다)을 선정하며” 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탁자” 라는 용어는 법인이나 기관 성격이기보다 개인 자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과 일치시켜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 으로 개정하여 범시행 규칙과 통일성을 기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추고자 함.
-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최초 위탁,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최초 위탁 경우에 한하여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임.
- 따라서, 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에만 적용하기보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행적 위탁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탁자” 라는 용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 으로 규정하여 법령체계와의 정합성(整合性)을 확보함 (제6조제3항).
- 나.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재위탁(수탁기관의 변경 등)하고자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6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37호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를 “제6조제2호의 기관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스토킹범죄는 개인정보 유출, 신변위협, 강력범죄 피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피해자의 정보보안 및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이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업무는 피해자의 접근성·법적보호를 위한 공공성 및 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위탁 관련 규정을 공공위탁으로 명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으로 변경함(제11조제1항)
- 나.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제11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38호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성착취물 등” 을 “성착취물 등과 신상정보(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피해자를” 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영상” 을 “영상 및 신상정보” 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제7조에 따른 사무 및 제9조의 운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를 “제7조에 따른 사무 및 제9조의 운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공공위탁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2024.9.26.)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등 보안 및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직결됨.
- 이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피해자 지원의 범위 확대(제3조 및 제7조)
- 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설 위탁 기관 명확화(제12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3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은 도시정비법 제11조·제54조·제66조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재개발사업의 경우 제48조제3호는 180퍼센트 이하, 제48조제4호는 2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제4호가목 중 “용적률(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제48조제3호는 180퍼센트 이하, 제48조제4호는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을 “용적률”로 한다.

별표 19 제2호 사무명란 바목 중 “한정하되,”를 “한정하되, 서울시가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거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51조제2항제3호와 별표 16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규정은 2028년 3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준주거지역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체계를 도입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정비구역 내 미래 정책수요 대응 차원의 목적으로 결정된 공공공지(정비기반시설)의 권한 위임사항 개정을 통해 결정 권한과 관리 주체(소유권)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 추가 연장함(부칙 제2조).
- 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체계 및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범위를 규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미적용 상한용적률 산식 규정을 삭제함(제 49조, 제51조).
- 다. 서울시 소유 부지의 공공공지 변경·결정은 서울시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별표 19 제 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440호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2항 중 “고독사 현황”을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으로, “고독사 발생”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독사”를 “고독사·사회적 고립”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위험자”를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원”을 “사회적 고립예방 및 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주민모임”을 “공간 및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공사업”을 “제공사업 등 사회적 고립가구 특화 일상생활 돌봄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를 “생애주기별”로, “일자리”를 “일자리, 사회참여 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단체”를 “단체·개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참여자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의 형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바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 정기적 안부확인, 심리상담·치료 등의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 물품·서비스 또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독사예방법」 과의 통일성을 위해 ‘고독사 정의’ 개정(제2조제1호)
- 나.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사회적 고립 예방’ 포함(제3조제2항)
- 다. 고독사 예방 사업 강화를 위한 물품, 바우처 등 지원 근거 마련(제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41호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09:00” 을 “06:00”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동부·남부·강서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 운영 관련하여 주간 운영 시간 확대 조정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주간 운영 시간을 확대하여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편의 및 사용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동부·남부·강서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 운영 관련 주간 이용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6시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442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자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 고시(행정안전부, 2024. 8. 1.)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33조제1항제6호자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9443호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장소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안전교육) 시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법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중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작년 연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학동 화재 등으로 재난 용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시민 불안감이 늘어나고 적절한 재난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화재 사상의 원인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40% 이상으로 나타난 만큼, 관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함(제3조).
- 나.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다.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5조).
- 라. 시장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하도록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44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를 “실시해야”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사고 예방” 을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 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주·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 시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를 의무화하고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동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을 실시토록 명시함(제9조)
- 나. 주·정차 위반에 관한 규정 신설(제14조 신설)
- 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제15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445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제6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7조의4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8조의5제2호에 따른 기축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 을 “제2항과 제3항” 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이상
 2.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
- 제11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및 인증에 관한 업무
 4. 제10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존의 공동주택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를 신규 주택에만 규정하고 기축 주택에는 면제하는 대신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및 주차장의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을 세분화하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인증에 관한 업무와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세분화(제7조의4)
- 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인증,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46호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 또는 일부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을 말한다.
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하는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2. 시민을 위한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영상물 제작
 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 사업
 4. 지역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5.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제작 사업
 6. 지역 현안과 갈등 조정 관련 토론회 개최와 프로그램 제작 사업
 7.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 2. 지원한 경비를 지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3. 그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가 정지된 경우

제9조(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 2.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 3.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4.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3.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전심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심의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지역중합유선방송 발전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시 관내 지역종합유선방송(이하 지역방송)은 지상파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밀착형 보도로 지역성·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
- 이에,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종합유선방송을 정의함(제2조)
- 나.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라. 지원 대상·사업·절차를 규정함(제5조~제7조)
- 마.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제15조)
- 바. 위원회 심의결과 등의 공개를 규정함(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47호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전세사기피해자 중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의 업무를 조례에 규정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상담 및 작성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업무를 명시함(제5조제1항제6호)
- 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규정함(제5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448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임신·출산 및 육아친화적인 조직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공무원에게 검진 및 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공무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9조제5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449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원상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를 “직접복구비 및 손괴 이전 수도시설에의 잔존 가치를 환산한 간접복구비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급수자원 비용” 이란 급수불편 최소화를 위한 병물 지원에 드는 비용

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든” 을 “건설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든”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을 “이외 시설에서” 로, “부담시키는 경우” 를 “기존 수도시설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설계도서” 를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설계도서”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급수자원 비용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 를 “제3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원상복구비” 를 “직접복구비”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 여비로 한다” 를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다” 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담금의 간접복구비는 손괴 이전의 수도시설의 잔존가치 환산비용을 부과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times \text{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기타 추가 비용}$

가.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에서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 1)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 시설, 취·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매년 고시/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 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배수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단위사업비를 산정한다.
- 2) “총사업비”란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3) “시설용량”이란 서울특별시 정수용량의 총합계를 말한다.

<p>《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산정기준》</p>
<p>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여기서, 총사업비는 총가동설비자산 중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을 포함한다.</p>
<p>②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여기서, 총사업비는 총가동설비자산 중 취수, 도수, 정수, 송수, 지역배수지를 포함한다.</p>

나.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에서의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란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계산한 인원에 서울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연도(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 1) 1인 1일 최대 급수량 = 1인 1일 급수량 × 침투부하율
 - 2) 1인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타 추가 비용”이란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사업지구 수도공급을 위하여 당해 수도시설 설치공사로 주변 급수환경 변화를 발생시켜 정상화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이며, GIS 측량비, 관 세척(퇴수)비, 출동작업 경비, 단수 홍보비, 혼탁수 발생 처리비, 급수차의 사용경비 등 관련 처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으로 산정한다.

라.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지구 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 부과하되,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추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준공 전 차액을 정산한다.

※ 물 사용량을 추정할 수 없을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가.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 개발사업에서 “단위사업비”란 서울시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1) “순자산”이란 서울특별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 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누계액 + 공사부담금 누계액 + 원인자부담금 누계액 + 재평가적립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2)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에서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란 최근 3년 평균 업종별 구경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한다. 단 업종은 가정용과 비가정용으로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매년 고시/공고한다.

다. 부과 대상 사업의 시설용량, 단위사업비 공고 등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된 정의를 준용한다.

라.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은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하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5밀리미터를 적용한다. 다만, 물사용량을 고려하여 급수관의 구경을 결정할 수 있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수도시설이 손괴되었을 경우, 실제 발생한 공사비(직접공사비)에만 ‘원인자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사고 복구를 위한 공사비 이외에 수도시설의 잔존 가치 등을 고려한 ‘간접복구비’ 를 추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또한,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납부 주체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수도물을 차질 없이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 원상복구비를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구분함(제2조, 제3조).
- 나.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제3조제1항).
- 다. 수도시설 잔존가치 환산한 ‘간접복구비’ 적용한 산정기준 마련함(제4조).
- 라.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수도시설 자산 등을 반영함(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50호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효과분석”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대효과”를 “효과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후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기후예산서·결산서는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계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문·심의)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40명 이내”를 “40명 내외”로 한다.

제1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7조에 따라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기후예산제와 탄소중립 정책의 연계성 강화 및 체계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통합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한 기후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후결산서 관련 내용 규정(제5조제3항)
- 나. 기후예산서·결산서 작성 규정 신설(제5조제5항)
- 다.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규정 신설(제6조제1항)
- 라.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제6조제2항, 제7조~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51 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지하개발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 시장은 도로(이하 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의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 제14조와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서울의 관내 도로(시도이면서 보도를 포함한다)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도로 지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신속히 조치토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하개발사업자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4호)
- 나.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개발 사업에 따른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 실시를 의무화 함(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52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자녀” 를 “자녀, 손자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 범위를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서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까지 확대하여 희생·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지원 사업 대상에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추가하여 규정함(제7조제1항 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453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에너지공사의 정관 변경 시, 시장 인가 전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내실화 이바지

2. 주요내용

- 가.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제6조제2항 후단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454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3.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예술·체험·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32조 및 제33조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점검 등) ①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계획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공인가 신청 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은 공사 시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원 및 녹지 내 설치된 시설물·식재 등의 형태, 위치, 성능 또는 상태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2. 토양 등 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점검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점검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식재기반 조성의 점검에 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도시공원에서 개최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공익적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공원 등을 조성 후 공원관리청으로 이관 시 사업시행자와 공원관리청이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시공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바, 점검해야 할 항목에 토양 등 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도시공원 조성 시 환경오염 및 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관리 이관 후 발생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호의 범위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제22조제2항 신설)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제22조제2항제2호 신설)
- 라.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예술·체험·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 마.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계획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공인가 신청 시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31조제1항 신설)
- 바. 공원 및 녹지 내 설치된 시설물·식재 등의 형태, 위치, 성능 또는 상태 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제31조제1항제1호 신설)
- 사. 토양 등 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점검(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 아.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기부채납 공원 및 녹지 점검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 자. 식재기반 조성의 점검에 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제31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45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5항제2호 중 “안전진단” 을 각각 “재건축진단”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60퍼센트” 를 “50퍼센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를 “경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며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란 용어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6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5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안전 측면 외에 재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평가를 포함하는 진단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2월 3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를 “재건축진단”으로 일괄 수정하되, 개정사항은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제9조제1항부터 제5항 및 부칙)
- 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현행 60퍼센트 이상에서 5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56호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민간전문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조사
3.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6조의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 제7조(청렴도 평가) ① 의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① 의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모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서울시의회 전반에 청렴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의회의 의원과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제2조)
- 나.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제4조)
- 다.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활성화 사업, 청렴도 평가, 청렴도 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57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봉사동물”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5(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영 제14조의3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한 위원에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

제8조제3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16조제5항제1호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 또는 구청장은 봉사동물로서 은퇴한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건강, 행동 양태 등 동물의 기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나 사람을 위해 현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동물이 해당 직무에서 퇴역한 경우 입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봉사동물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16호 신설)
- 나. 서울특별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의5 신설)
- 다. 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의5제2항 및 제3항 신설)
- 라.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의5제4항 신설)
- 마. 국가나 사람을 위해 봉사하거나 봉사한 봉사동물의 입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5조제5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458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장의 책무) ⑧ 시장은 사업자가 제6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신규 시내버스로 도입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등급 및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업자의 책무) ③ 사업자는 신규 시내버스로 제9조 제8항에 따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전기버스, 수소버스로 교체·도입되고 있는 바, 특히 전기버스로의 전환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향후 전기버스 사용 후 배터리의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시내버스(전기버스) 선정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전기버스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사업자가 전기버스를 신규 시내버스로 도입하는 경우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9조제8항 신설)
- 나. 사업자는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버스를 도입하도록 협조할 것을 규정함(제10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459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은 사업자가 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를 신규 마을버스로 도입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등급 및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때에는 제10조 제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서울시 마을버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전기버스, 수소버스로 교체·도입되고 있는바, 향후 전기버스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신규 마을버스 도입 시 전기버스의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전기버스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사업자가 전기버스를 신규 마을버스로 도입하는 경우 수치화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버스를 도입하도록 지원 및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함 (제10조제9항)
- 나. 사업자는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버스를 도입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정함(제11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60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상당하는 수도계량기 구경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시설의 구경별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경우 전액 감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감면에 필요한 일반회계 보전이 2008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서울아리수본부의 재정적 부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해당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수도요금 감면 대상의 하나인 ‘천재지변 지역’을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으로 변경하여감면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화재나 감염병등에 따른 사회재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시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도요금 감면 내용 중 천재지변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으로 변경함(제31조제1항제1호).
- 나. 수도요금 감면 내용 중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등을 삭제함(제31조제1항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461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립체육시설 사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나 팀의 태권도 훈련을 위해 시립체육시설(「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시장의 지원을 받은 선수·팀
2. 제8조에 의해 표창을 받은 우수 선수·팀
3. 서울특별시 내 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 팀
4. 그밖에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이에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고, 태권도 선수 및 팀의 충분한 훈련 공간 확충을 위한 시립체육시설 사용 조항 및 체육시설 사용협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태권도 선수 및 팀의 태권도 훈련을 활성화하고자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62호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제16조 중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8조) 중 “단체”를 “단체(제18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살인 및 각종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특히 공동주택 자가 거주 외에 임차인 등도 동일한 거주자에 해당하나, 상위법상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외되어 있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 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 등에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필요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상 명시된 입주자등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후단에 신설(제2조제2항)
- 나. 해당 조항의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방교육 조항 개정(제16조)
-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하고, 주민화합 등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모범관리 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제18조)
- 라.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 등에 표창 등 수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제1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6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 “” 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 실태조사 “”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수급실태조사” 를 각각 “수급 실태조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급실태조사를” 을 “수급 실태조사를” 로, “수급실태조사원증표” 를 “수급 실태조사원증표”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급실태조사” 를 “수급 실태조사” 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 ” 를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 실태조사” ”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안전관리실태조사” 를 “안전관리 실태조사” 로, “수급실태조사” 를 “수급 실태조사”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급실태조사” 를 “수급 실태조사” 로 한다.

제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① 시장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 주차정보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14년 2월부터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별 공영 및 민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서울주차정보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주차장 위치 및 주차요금 등의 이용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편의는 물론 주차장 이용률 제고에 이바지함.
- 최근 IT 등 통신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촉진을 확대하고자,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의 편리성 확대를 도모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조항 신설(제4조의3)
- 나. 상위법령에 맞춰 띄어쓰기 등 수정(제3조 및 제3조의2, 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64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민간자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준공영제 버스운영에 민간자본이 진입하는 경우, 준공영제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감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4조제6항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심사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업자의 책무)”를 “(사업자 및 민간자본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민간자본이 양수도 방식으로 시내버스 사업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준공영제에 기반한 수입금 공동관리 및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운행기준 준수 및 노선관리 등 준공영제를 존중하고 재정건전화 및 버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민간자본이 제7조에서 제9조의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적용 및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수도 신고와 별도로 경영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19년 말부터 민간자본인 사모펀드가 시내버스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 및 신뢰성 저하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한 시내버스회사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이 인수할 경우 국부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자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제7호)
- 나.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버스운영에 진입하는 경우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제4항 및 제5항)
- 다.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시내버스 사업권을 확보한 경우 민간자본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제5항 및 제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65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종합 분석 및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 접근성 보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 지침’ 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의 수가 차이가 커 대중교통 이용 편의의 상대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1호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466호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의 양적 팽창과 질적 도약을 위해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주민의 주민자치회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제4조제1항제4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467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100분의 50” 을 “100분의 75”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시행 ' 24. 6. 27.)으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되어 조레 위입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해 건축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75%로 상향 조정함(제45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68호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민의 성평등 활동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등 다수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이 중 서울시에서 설치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는 성과평가에서 성과 및 과급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설치 취지가 퇴색되었음.
- 이에, 중복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를 삭제함(제4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69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제5조의3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의3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공체육시설 내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시립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위해 시설관리와 운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시립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시립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함(제3조제1항)
-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사용·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3제2항)
- 다. 공공체육시설 사용 허가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사용 허가의 제한도 위임사무에 추가하도록 함(제23조제1항제1호)
- 라. 사용료 감면 조항에 ‘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를 포함함(제10조제3호라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9470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서울시청 소속 선수와 지도자, 임원 유니폼, 이동차량 등에 서울 브랜드 로고를 넣어 홍보 효과를 높이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수탁자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근거 조항 신설(제10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71호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민간부문”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민간부문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
- 2. 시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 3. 예기치 못한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4.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사업
- 2. 개발컨설팅 사업
-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 사업
- 4. 해외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 5. 전문가 파견 및 기술협력 사업
- 6. 인도적지원
- 7.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 8. 해외도시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장학금 지원을 포함한다)
- 9.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국제개발협력에 기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5.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 등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도시화를 이룬 서울의 도시화 경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국제개발협력 이행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또한, 최근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제개발 관련 업무 범위를 키워 나가고 있음
- 이에,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서울의 도시 개발 및 운영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제1조)
- 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를 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범위 설정 및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사업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7조)
- 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8조~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72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외교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외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교류 등을 통해 외국 정부, 기관, 국민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외국과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국제교류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시와 해외도시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협력협정”이란 시와 해외도시가 향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상호 우호적인 협력 관계로, 친선결연을 체결하기 전의 관계를 말한다.
4.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시외교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해외도시와의 활발한 도시외교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외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친선결연 체결

제5조(친선결연 등) ① 시장은 도시외교 증진을 위하여 해외도시와 친선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친선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제6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시장은 해외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도시에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친선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수도 또는 수도에 준하는 도시로 시의 국제적 위상과의 유사성
2.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3.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7조(친선결연 등의 의결) 시장은 해외도시와의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상호 노력 의무만을 내용으로 하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친선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시장은 친선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친선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사업 추진

제11조(명예시민증 수여) 시장은 시의 도시외교 증진 및 해외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해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해외통신원 운영) 시장은 세계 각 도시의 해외 정책 및 현지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현지와의 소통 및 시정에 활용하며, 해외도시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해외통신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의 날 운영) 시장은 친선도시, 우호협력도시 등과의 우호증진 및 시 거주 외국인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도시의 날” 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해외도시 출신 외국인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친선도시 등과의 도시외교 증진을 위한 행사
- 제14조(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① 시장은 양 도시의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을 위해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및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외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거나 협력하여 시의 문화를 소개하고, 외국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2. 시의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해외 기관과의 인적 교류에 관한 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제4장 국제기구 유치

- 제15조(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6조(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2. 해당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5. 그 밖에 국제기구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국제기구 지원시설”이라 한다)로서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등을 운영한다.
- ② 시장은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등 국제기구 지원시설에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⑤ 시장은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립목적 수행 또는 원활한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기구 지원시설 일부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⑥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에 입주 중인 기관 및 단체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국제기구 지원시설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장 그 밖에 도시외교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제18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민간부문의 도시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외교에 협력하거나 시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시외교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민간위탁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사용료 부과기준(제17조제5항 관련)

시설명	대상	면적	사 용 료		비 고
			기준시간	금액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A)	142㎡	2시간 (초과시간당)	100,000 (50,000)	◦ 냉·난방기, 음향, 조명, 영상장비 등 부대시설 사용시에는 요금을 정하여 별도로 부과
	국제회의장 (C)	139㎡		100,000 (50,000)	
	국제회의장 (A+B)	225㎡		150,000 (75,000)	
	국제회의장 (A+B+C)	364㎡		200,000 (100,000)	

- ①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
-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③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④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⑤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 ⑥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100분의3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음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가가 주체였던 외교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많은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서울은 도시 발전 경험, 1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방문객 및 거주자, 문화·예술·관광, 외국기업 투자 유치 등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킬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음.
- 실제로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시 재량으로 도시외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시외교 전담부서도 마련되어 있으며 각종 우수정책을 해외 도시들과 공유하는 등 도시외교 외연을 확장해가고 있음. 시장도 서울을 글로벌 Top 5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개혁 및 인프라 구축 의지를 표명해 왔음.
- 이에, 기존에 도시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해외도시들과 실질적 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함
- 나. 각 조항에 ‘국제교류협력’을 ‘도시외교’로 변경함
- 다.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함
- 마. 민간부문의 도시외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473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단,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하개발사업으로 유출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하수처리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유출지하수 이용을 촉진하고자 신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시 재정지원 대상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규로 설치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제34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74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위해” 를 “위한” 으로, “분담금” 을 “분담금과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작업 중지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수당”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건설 약자인 일용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시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보전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으로 하여금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상조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지될 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9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75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세권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의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인 지역. 단,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 나. 승강장 경계로부터 가목의 범위를 초과하며 500미터 이내인 지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장기전세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란 이 조례에 따라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계획"이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용적률, 공공기여, 공공주택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단,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의한 정비계획
 -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
5. "사업시행자"란 제5조 각호의 사업을 위해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6. "사전검토"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합리적인 목표 수립과 공공기여,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높이 계획, 건축계획 등에 대하여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 및 자문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건설지원 및 매입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등

제4조(사업대상지) 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에 위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1.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2. 준공업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지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사업유형)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사업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6조(사업계획의 사전검토)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전 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전검토 신청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입안 제안) ① 사업시행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입안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의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제3장 공급 및 지원 등

제9조(공공기여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① 시장은 용도지역의 변경 및 용적률, 건축제한 완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역세권 중 준주거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받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받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하되,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공급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을 정한다.

제11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최근 서울시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내 공공임대주택확대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 등을 건립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 운영 및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시행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제2조)
- 나. 사업대상지 및 사업유형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다.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입안제안·결정 방법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라. 공공기여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947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 재단은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경제 진흥 활성화 및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ESG 경영”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등의 친환경적 ESG 관리 조항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 수립 및 추진 규정 신설(제16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477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향을”을 “사향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가로수의 도로별 식재 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에 따른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 기준을 마련하여 결정한다.

③ 가로수는 별표 4의 도로별 가로수 조정 규격에 따른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3과”를 “별표 5와”로 한다.

별표 3 중 원인자부담금을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3]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이며 보도폭 10미터 이상	2~3열 다층구조	· 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음
② 대로이며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2열 다층구조	
③ 중로이며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1열 다층구조	
④ 소로이며 보도폭 4미터 미만	1열 단층구조	

[별표 4]

도로별 가로수 식재 크기(제7조의2제3항 관련)

구 분	식재 크기	비 고
① 광로이며 보도폭 10미터 이상	가슴높이 지름 12센티미터 이상 근원 지름 15센티미터 이상	· 현지 여건 및 식재방법, 수종 등에 따라 식재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목도 식재할 수 있음
② 대로이며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가슴 높이 지름 12센티미터 이상 근원 지름 15센티미터 이상	
③ 중로이며 보도폭 3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가슴높이 지름 10센티미터 이상 근원 지름 12센티미터 이상	
④ 소로이며 보도폭 3미터 미만	가슴높이 지름 10센티미터 이상 근원 지름 12센티미터 이상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장의 가로수 조성 심의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재기준에 있어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 (별표 3) 및 ‘도로별 가로수 식재 크기’ (별표4)를 조례상 세분화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가로수 도로별 식재 기준 신설(제7조의2 신설)
- 나.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제7조의3제3호 신설)
- 다. 별표 3에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 신설(별표 3)
- 라. 별표 4에 도로별 가로수 식재 크기 신설(별표 4)

◆ 서울특별시조례 제9478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 을 “5년마다 수립”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식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정보의 디지털화, 무인화 등으로 인해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는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함(제5조제1항)
- 나.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5조제1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479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시지정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자치구의 주민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3. 6세 이하의 아동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동 조례 제32조에서 시지정유산에 대한 관람료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료 감면 조건에 대해서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람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가. 시지정유산 관람료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제32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480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

제7조의2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5.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 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3년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연도별 층간소음, 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층간흡연 민원은 22년 3만 5천여 건으로, 20년 2만9천여 건에 비해 20% 가까이 폭증하는 등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은 공동생활주택에서 주민 간 지속적 갈등을 야기하는 고질적 문제임.
- 특히 층간 흡연의 경우 환기구 등 배기구를 통해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쳐 영유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우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관리실 전화 및 공동 방송 등을 통한 자제 요청 외에 현실적 해결방안이 없어 ‘층간소음’에 버금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음.
- 또한 층간소음과 달리 층간 흡연의 경우 피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간 갈등만 야기할 뿐 그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이에 조례개정을 통해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최소한의 피해구제 및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대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제3조제6항의 신설).
- 나.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제2항제6호의 신설).
- 다.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및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의2제4호 및 제5호의 신설).
- 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우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표창사항을 규정함(제17조제2항의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481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제7호 중 “통역·번역” 을 “통역·번역 및 수어통역” 으로 한다.

- 11. 외국인주민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은 「서울특별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보장 및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관공서를 방문하는 등의 상황에 있어 민원실 등을 방문했을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민원 취약계층에게 수어통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및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규정 신설(제7조제1항제11호)
- 나.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 중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 기존 통·번역 외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확대 규정(제7조제2항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482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브랜드총괄관은 민간전문가로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을 적용받는바 수행한 자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개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실시한 자문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제6조제8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83호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한강공원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사무위임)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2항 신설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 (법 제23조의3 신설, '24.1.2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먹이주기 금지구역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관련 내용의 구체적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라.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을 규정함(제4조)
- 마.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사.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를 규정함(제7조)
- 아.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84호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이하 “어울림플라자” 라 한다)”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등촌1동)에 설치한 복지문화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어울림플라자 내의 공연장,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수영장, 주차장 등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어울림플라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대관료”란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어울림플라자의 기능)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및 비장애 지역주민 등 시민에게 문화·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지원
2.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시설의 이용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원가·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 10. 65세 이상 어르신
- 11. 어울림플라자 운영으로 인해 소음과 빛 등 생활공해, 사생활 제한 등의 불편이 발생하는 곳으로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하기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 조례·규칙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이용료를 체납하거나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 3.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장 시설의 대관 등

제7조(대관 허가)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시설에 대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대관 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2. 대관자가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대관자가 사용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대관자가 이 조례·규칙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 5.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대관료 부과 및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제1항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액
- 3. 대관자가 장애인 단체인 행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다만, 구체적 범위는 규칙

으로 정한다.

제10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1.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특정 정치·종교 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종교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5. 대관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임의로 대관신청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 6. 대관신청인이 제8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대관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7. 대관신청인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8.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상 대관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4장 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리·운영규정의 작성 등) ① 수탁기관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어울림플라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울림플라자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명령, 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울림플라자 이용료 부과기준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연수교육		당일 반일 이내	15,000원 ~ 50,000원	○ 토요일, 공휴일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당일 전일(8시간)	30,000원 ~ 100,000원	
		1박2일 (12시간)	45,000원 ~ 150,000원	
		2박3일 (18시간)	67,000원 ~ 225,000원	
생활문화· 생활체육		당일	5,000원 ~ 50,000원	
		1개월	40,000원 ~ 100,000원	
수영장	수강료	1개월 (주3회)	60,000원 ~ 100,000원	
	자유수영	1회	5,000원 ~ 10,000원	
연수객실(숙박)		1박	100,000원 ~ 140,000원	

※ 일반 프로그램 이용료이며, 그 밖에 무료 또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별표 2]

어울림플라자 시설 대관료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공연장	350,000원 ~ 550,000원	1. 1회(4시간) 단가로서, 1회는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야간(18:00~22:00)으로 함 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다목적강당	250,000원 ~ 450,000원	
문화교실	10,000원 ~ 60,000원	1. 시간당 단가이며,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2.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대회의실(식당)	60,000원 ~ 120,000원	
세미나실	40,000원 ~ 80,000원	
분임토의실	20,000원 ~ 40,000원	

※ 시설별 부속시설 이용료는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관료와 별도로 청구 가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어울림플라자(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하는 복지문화시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2조)
- 나. 어울림플라자의 주요 기능(제3조)
 - 장애·비장애 지역주민 등 시민에게 문화·체육 교육 및 여가 활동 공간 지원
 - 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다. 어울림플라자의 이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제4~6조)
 - 이용료 부과징수, 납부·반환, 이용 제한 등
- 라. 어울림플라자의 대관 등에 관하여 규정(제7~12조)
 - 대관 허가취소, 대관료 부과감면, 대관 제한 및 대관자의 의무 등
- 마.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제13~16조)
 -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 위탁 및 비용 지원 가능

◆ 서울특별시조례 제9485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 를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 를 “심의·자문하기” 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를 “인구정책위원회”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을 “기본계획 및”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5명” 을 “2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저출생·고령화, 도시공간계획 등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외국인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6항 중 “해당안건” 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해당안건”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임기 만료 시점 도래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위원회 관련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명칭을 ‘인구정책위원회’ 로 변경하여 인구정책 아젠다 발굴·정책화 역할 강조하고자 함(제7조)
- 나. 위원회 자문 기능을 조항에 추가하여 시 인구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제7조)
- 다. 이민·다문화 분야 신설, 청년·여성 분야 확대를 위하여 총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제8조1항)
- 라. 위촉직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인구정책 관련 분야를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8조3항제4호 및 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486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3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법학전문대학원” 을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도시보건대학원” 을 “도시보건대학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여 국제도시 분야 고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을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 으로 변경하고, 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87호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명이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 공공사용”을 “공공사용”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을 “설치 및 관리·운영의 대행”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운영의 관리대행)”을 “(관리·운영의 대행)”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탁기관을”을 “관리대행업자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로 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안전감사 ombudsman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ombudsman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도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를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을 ““투자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정 투·융자 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남북협력과장”을 “평화기반조성과장”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란 중 “교통정보과”를 모두 “미래첨단교통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을 요하는”을 “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상시출장을 요하는”을 “상시출장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을 요하는”을 “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분해를 요하는”을 “분해가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정리를 요하는”을 “정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8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공급기획관”을 “건축기획관”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안전총괄관”을 “도로기획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다목 단서 중 “보온을 요하는”을 “보온이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 중 “보온을 요하는”을 각각 “보온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정리를 요하는”을 “정리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정리를 요하는” 을 “정리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단서 중 “전문성을 요하는” 을 “전문성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 을 “전문성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 을 “요양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 을 “전문지식이 필요한” 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을 “긴급한” 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치료를 요하는” 을 “치료가 필요한” 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회복을 요하는”을 “회복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술을 요하는”을 “기술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설치를 요하지”를 “설치가 필요하지”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12조의1제2항제2호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건강진단을 요하거나”를 “건강진단이 필요하거나”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청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 을 “청렴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 를 “긴급하거나” 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 를 “긴급하거나” 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를 “긴급하거나” 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원순환과” 를 “자원회수시설과” 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주관국(과)란 중 “여성가족정책실(권익보호담당관)” 을 “여성가족실(양성평등담당관)” 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여성가족정책실장” 을 “여성가족실장” 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 을 “여성가족실장” 으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여성가족정책실장” 을 “여성가족실장” 으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출산육아담당관” 을 “여성가족실장과 아이돌봄담당관” 으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실장” 을 “여성가족실장” 으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 을 “여성가족실장” 으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노동정책담당관” 을 “노동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중 “소상공인담당관” 을 “소상공인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중 “소상공인담당관” 을 “소상공인정책과장”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정경제담당관” 을 “공정경제과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소상공인담당관” 을 “소상공인정책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정경제담당관” 을 “공정경제과장” 으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공정경제담당관” 을 “공정경제과장” 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을 “장애인복지과장” 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빅데이터담당관” 을 “데이터전략과장” 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을 “건축기획관, 교통운영관” 으로 한다.

제79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 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 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 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 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 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 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 라 한다)” 로 한다.

제8조 중 “성평등위원회” 를 “양성평등위원회” 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 를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3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용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 나.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이관)에 따른 부서명 정비
- 다. 그외 경미한 오기 정정
- 라. 어려운 용어 “요하는”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9488호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 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신청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및 분쟁 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 2. 당사자 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 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별표]

수수료(제10조 관련)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알선신청	10,000원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
책임재정 또는 중재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참가신청	1. 조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신청	5,000원

비고

1.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면제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제명)
 -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제2조)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다. 위원회 소관사무 확대에 따른 구성위원 수 변경(제2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 라. 위원회 소관사무에 건강피해조사가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신설(제5조)
- 마. 명칭변경(제8조, 제9조)
 - 관계전문가 ⇒ 전문위원, 심사관 ⇒ 조사관

◆ 서울특별시조례 제9489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시민 “” 을 “ “시민” ” 으로, “ “시 “” 를 “ “시” ” 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시민제안 “” 을 “ “시민제안” ” 으로, “이하 “시장 “” 을 “이하 “시장” ” 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위원장” 을 “위원장 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으로 시민부문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동 조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조항 현행화(제13조제2항)
- 나. 위원회 조항 재정비(제19조 및 제22조)
- 다.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490호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을 “위원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를 “건설기술정책관이 맡고” 로, “자로 한다” 를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은 서울특별시” 를 “위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은” 을 “위원:” 으로, “경험” 을 “관한 경험” 으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 을 “임명 또는 위촉”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그 직무를 수행” 을 “직무를 수행” 으로,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을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심의 할” 을 “심의·의결할”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제3항 관련)

(단위: 만원)

제 재 기 준			포상금 지급액
위 반 행 위	영업 정지	과징금	(개별처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의 7퍼센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의 건설업자에 하도급 - 2인 이상의 건설업자에 하도급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8개월 6개월	1,500 ~ 24,000 1,200 ~ 18,000	1,680 이내 1,26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록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6개월	1,200 ~ 18,000	1,26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4개월	800 ~ 12,000	84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4호 	4개월	4,000	28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불이행 ○ 위반행위 근거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2개월	2,000	140 이내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조직 개편사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 대행 정비(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 나. 위원회 서면심사 구체화 근거 명시(제12조제1항)
- 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인용조문 현행화(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9491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 공기업법」 제49조”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8조원”을 “12조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1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서울시의 지속적인 출자가 예상됨에 따라 조례상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권자본금 한도를 8조원에서 12조원으로 상향(제5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49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패션산업 진흥 및 디자인문화예술 향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이라 한다) 내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공원부 및 그 부속 건물 등으로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2. “대관”이란 행사, 공연, 전시 등(이하 “행사등”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별표 2 각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정기대관: 다음 연도 및 5년 이내 행사등의 일정 확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
 - 나. 수시대관: 정기대관 지정 이후 잔여일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대관
- 3. “대관자”란 제2호의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행사등의 개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 이용의 원칙)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 또는 대관자가 행사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1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7.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1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9.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2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21. 그 밖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주차요금)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1. 취식 또는 음주하는 행위

-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 3. 고성, 난무, 흡연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4. 관람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대관의 신청 및 허가

제8조(대관 신청) 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대관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 접수기간까지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대관의 경우 대관 일정이 비어있을 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대관 제한) 시장은 대관 신청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등
- 2. 특정 종교단체가 개최하거나 종교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등
- 3. 특정 정치단체가 개최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등
- 4. 그 밖에 친목모임 등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사등

제10조(대관 허가)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정기대관은 대관 신청서 접수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수시대관은 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대관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신청이 1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대관 허가 취소) 시장은 대관을 허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대관자에게 그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1. 대관자가 대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2. 대관료를 시장이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대관자가 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의 유지와 관련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관받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

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는 대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안된다.
- ④ 대관자는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장 대관료

제13조(대관료) 시장은 대관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산정한 대관료를 부과·징수한다. 대관료 부과와 관련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시가 주관하는 행사등의 경우: 면제
- 2.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주관하는 행사등의 경우: 20퍼센트 감액

제15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① 대관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대관심의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설 대관의 허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 1. 정기대관 : 7인 내외
- 2. 수시대관 : 5인 내외
- ② 위원회는 대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된 후 해산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행사등 관련 전문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디자인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④ 위원장은 심의 당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대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관리·운영의 위탁

제2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서울디자인재단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시설(제2조제1호 관련)

시 설		면 적(㎡)
건 물	소 계	86,574.70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상3/지하4)	82,464.10
	이간수문전시장	2,057.93
	동대문운동장기념관	339.25
	동대문역사관1398	1,260.28
	갤러리문(門)	453.14
토 지	소 계	65,142.10
	대지	62,108.70
	도로	3,033.40

[별표 2]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 대관 시설(제2조제2호 관련)

구분		시설명		면적 (㎡)	
합 계				41,028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소 계			19,024	
	컨벤션	컨벤션 1관			2,992
		컨벤션 2관			1,547
		부속 시설	컨퍼런스홀		414
			비즈니스라운지		86
			고객지원실		289
			VIP대기실		102
		전시관	전시 1관		
	전시 2관			1,462	
	부속시설			328	
	둘레길			4,051	
	다목적홀	다목적홀 1 (1층)			3,091
		다목적홀 2 (2층)			1,340
		화상 스튜디오 (2층)			378.22
		화상 회의실 (2층)			114.18
		다목적홀 3-1 (3층)			627.6
		다목적홀 3-2 (3층)			416
		다목적홀 4-1 (4층)			570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실내	소 계		1,416
			갤러리문		341
이간수문전시장			1,075		
실외		소계			20,588
		디자인거리			617
		어울림광장			2,351
	잔디언덕			1,919	
팔거리			781		
기타(공원)			14,920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대관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제12조)
- 다. 대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제15조)
- 라. 대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제19조)
- 마.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93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 를 “(정의)”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이 조례에서 “청년” 이란” 을 “ “청년” 이란” 으로 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무복무 제대군인” 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및” 을 “ 「청년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으로 한다.

제5조 중 “시는” 을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는”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시의” 를 “시의” 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수립시” 를 “수립 시”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 “위원회” ” 를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위원회” 를 각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위원장은” 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은 당연직” 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당연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위원회” 를 각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하며, 같은 항 전단 중 “분과회의” 를 “분과위원회”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분과회의의” 를 각각 “분과위원회의” 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위원회” 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간사를 둔다” 를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위원회 운영” 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의” 를 각각 “시의”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청년기본법」 제15조” 를 “법 제15조”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범위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의” 를 “시의” 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 를 “시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자격요건” 을 “사람”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시행할 때”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 를 “범위에서 청년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범위 내” 를 “예산 범위” 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청년 시설” 을 “청년시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평정가격” 을 “재산 평정가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9세~39세” 를 “19세부터 39세” 로 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제대군인이 의무 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함과 더불어 기타 약칭 및 위원회 관련 조항 등을 수정하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제24조)
- 나. 약칭 추가 및 수정(제4조, 제5조, 제9조)
- 다. 위원회 분과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간사 관련 조항 수정(제9조제10항 및 제11항)
- 라. 예산 범위 지원 내용 명시(제14조)
- 마.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49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 를 “뜻은 다음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장애’ 라 함은” 을 “ ‘장애’ 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 ‘장애인’ 이라 함은” 을 “ ‘장애인’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장애인 차별금지’ 라 함은” 을 “ ‘장애인 차별금지’ 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 ‘장애인 인권증진’ 이라 함은” 을 “ ‘장애인 인권증진’ 이란”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홈페이지” 를 “누리집”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 중 “기관” 을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장” 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을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전단 중 “기관” 과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 을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으로 한다.

제10조의4 전단 중 “기관” 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심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제2항 중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를 “장애인복지위원회”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 문제 및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제12조 제1항)
- 나.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관련 규정(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및 해촉, 회의 운영 등) 삭제(제12조제3항~제11항)
- 다.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제13조제2항)
- 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사항에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위촉 위원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함(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495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 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 를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로, “조례가” 를 “조례에서”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한한다” 를 “한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제7조제1호 본문 중 “직무에 특히 성실” 을 “직무를 성실히 수행”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제13조에 따른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등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공무원 등과” 를 각각 “공무원등,”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 을 “범위” 로 한다.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표창 서식의 세부 양식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얻은 후 추천한다” 를 “미리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표창시 해당” 을 “표창 시 제13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장의” 를 “상장을 수여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부서로 하여금” 을 “감사부서에” 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이하 “공적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중 “위원장이” 를 “공적심의회 위원장이” 로, “지명한다” 을 “미리 지명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공적심의회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 ③ 제1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은 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④ 제2공적심의회는 시장 또는 장관급 상당의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한다.
- ⑤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⑦ 공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소속기관 공적심의회)” 를 “(시 소속기관 공적심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속기관장” 을 “소속기관의 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으로, “표창권자가” 를 “시 소속기관의 장” 이” 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7조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기록부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제 호

표 창 장

성명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별지 제2호서식] 상장

제 호

상 장

성명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별지 제3호서식] 감사장

제 호

감 사 장

성명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별표 서식에 규정된 표창 양식과 실제 활용 중인 양식 간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표창 디자인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표창 양식에 표창의 종류, 대상자, 표창권자 등의 내용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디자인 규정은 삭제함(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나. 기타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 조항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496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청년층 전체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10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497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
 1. 측량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
 2. 단순한 착오·오기 정정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서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처리할 수 있다.
 1. 측량에 의한 지구면적 변경
 2. 단순한 착오·오기 정정

제9조의 제목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을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③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1명과 1명 이상의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맡고, 서기는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맡는다.
- ⑤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

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로,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간주하여” 를 “주차장설치제한지역으로 보고”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치구” 를 “각 자치구” 로, “관리조례” 를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자율” 을 “이자률” 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을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영 제34조제2항” 을 “영 제34조제3항” 으로 한다.

⑥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임대주택등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서

제안자	법인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신청내역	신청지역	대표 위치			
		예정 사업명 (구역명)			
		구역면적	(㎡)		
	토지등소유자	총 소유자수	명		
		동의자수	명	동의율	%
기본사항	상위계획	○○계획과의 적합성		검토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구역면적 등	재정비촉진구역 면적 등의 적법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등)			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노후도	노후도 비율의 적합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등)			적합 또는 부적합 기재
<p>「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안자 대표 (서명 또는 인)</p> <p>※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름</p> <p>○○ 구청장 귀하</p>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설정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설정함(제3조제3항, 제5조제3항)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하는 제안서 서식을 신설함(제4조제2항, 별지 서식)
-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범위를 규정함(제20조제6항 신설)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675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제보” 를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보” 로,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로, “거처 보상금” 을 “거처” 로, “지급한다” 를 “보상금을 지급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 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 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맞춰 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정비(제3~5조 삭제)
- 나.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에서 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장애인복지위원회’ 에서 하도록 함(제6조제1항)
- 다. 개정 규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